#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302 제출연월일 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「지하수법」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30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.

법률 제 호

#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5항 중 "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"을 "「지하수법」 제30 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"으로 한다.

제31조, 제31조의2,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8조제1항제5호 중 "제31조제3항,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"을 "제40조제1항, 제41조제1항 또는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3제4항"으로 한다.

제59조제10호의2를 삭제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 체납에 따른 검사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)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은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- 제3조(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 및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, 징수비용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5 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4조(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, 징수유예 취소 또는 남은 체납액의 일시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5조(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
- 제6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26조(수입신고 등) ① ~ ④ (생 제26조(수입신고 등) ① ~ ④ (현 략) 행과 같음) ⑤----- 「지하수법」 제 ⑤시·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 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 하수이용부담금----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 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. 제31조(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・ <삭 제> 징수 등)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 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 가를 받은 자, 먹는샘물등의 제 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 질개선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 라 한다)을 부과 · 징수할 수 있 다.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 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 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, 먹 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

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·징수한다.

- 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
- 2. 「수도법」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
- 3. 「하수도법」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
- 4.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 을 평균한 금액
  - 가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  - 나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
   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
     률」 제32조제1항에 따른
     물이용부담금
  - 다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 용부담금
  - 라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

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
- 5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 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 보전 부문의 세출
- ③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계측기(計測器)를 설치·관리하고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 금의 부과대상, 부과금액, 부과 · 징수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 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 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「국세 징수법」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.
- ⑥ 제1항·제2항 및 제5항에 따

- 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-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 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 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 수정(取水井)이 위치한 특별자 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.
- 8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 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 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한 시·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 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다.

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 른 시 · 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 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 제재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①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 을 징수하기 위하여 「지방세기 본법 |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 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1조의2(부담금에 대한 이의신 | <삭 제> 청 특례) ① 제31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
- 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,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같은 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- 제32조(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 납부 등) ①환경부장관은 부담 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수 있다.
  - 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 이 있는 경우
  - 2.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된 경우

<삭 제>

- 3.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-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 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 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 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 에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 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 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1.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
- 2.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3.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

  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

   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, 분할 납부의 횟수,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(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)
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
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
다. 다만, 제31조제8항에 따라
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
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・징
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
사용하여야 한다.

- 1.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
  2.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
  2의2.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 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
- 3.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 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

제48조(허가의 취소 등) ①시·도 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 <삭 제>

제48조(허가의	취소 등)	1

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제21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2항 후단, 같은 조 제3항 후단, 같은 조 제6항 후단, 같은 조 제7항 후단,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, 제29조제2항, 제30조, <u>제31조제3항</u>,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
- 6. ~ 1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5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~ 10. (생 략)
  - 10의2.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 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·.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제40조제1항, 제41조제1항
또는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3
<u> </u>
6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[59조(벌칙)
03年(宣行)
, 1 10 (=1=1=1=1=1=1=1=1=1=1=1=1=1=1=1=1=1=1=1
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&lt;</u> 삭 제>

11. ~ 19. (생 략)

11. ~ 19. (현행과 같음)

#### [별지 제2호서식]

#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의 결과

- 수질개선부담금을 수입으로 활용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, 연간 약 60억 수입 감소
  - 이 부족분은 환특 R&D 사업을 조정하여 지출을 약 60억 줄일 계획임

(단위: 백만원)

구 .	연 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지출	○환경개선특별회계	△6,000	이하 좌동					△6,000
시골	소 계(A)	△6,000	이하 좌동					△6,000
수입	○ 환경개선특별회계	△6,000	이하 좌동					△6,000
一一日	소 계(B)	△6,000	이하 좌동					△6,000
총비	용(A-B)	-	_	_	_	-	_	-

# Ⅱ. 재정수반요인 : 먹는물관리법 상 수질개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 내용
1	제31조(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 · 징수 등)	<ul><li>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,</li><li>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・징수 가능</li></ul>

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31조(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)	가	

## < 비용추계 총괄 >

(단위: 백만)

년 도 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합 계	6,195	6,251	6,307	6,364	6,421	6,479	6,537	44,554
환경부	6,195	6,251	6,307	6,364	6,421	6,479	6,537	44,554
지자체	0	0	0	0	0	0	0	0

# < 항목별 비용 추계 >

(단위: 백만)

년 도 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합 계	6,195	6,251	6,307	6,364	6,421	6,479	6,537	44,554
환특세입 감소분	6,195	6,251	6,307	6,364	6,421	6,479	6,537	44,554
지자체 감소분	0	0	0	0	0	0	0	0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가. 개정법률은 2025년 1월 1일 시행 (부칙 제1조)
-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되는 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
- 나. 체납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상한액 신설은 비용추계에서 제외
-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하였으나, 가산금의 부과규모가 작고, 가산금의 부과액수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비용추 계에서 제외
- 다. 기타 예측 불가한 가산금 · 체납액은 비용추계에서 제외
  - 2023회계연도에 부과된 가산금(663백만원) 중 결손처리 필요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과액은 약 3.9%으로 가산금 부과 사례가 적으며, 가산금 부과는 영업자의 경영상황 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기 어려움
- ※ 2024 회계연도 기준 분할납부 또는 미납될 수 있는 부담금, 가산금 및 체납액은 유예 규정을 두어 향후 「지하수법」 상에서 부과·징수토록할 예정임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O 수질개선부담금(환경개선특별회계)이 지하수이용부담금(지자체 회계)으로 통합되면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입결손 발생(이에 환특사업 조정하여 보정 예정임)

#### < 수질개선부담금 전체 및 환경부 추계액 >

(단위 : 백만)

년 년 단 단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전체 징수액	15,489	15,628	15,769	15,911	16,054	16,198	16,344	111,393
환경부 세입	6,195	6,251	6,307	6,364	6,421	6,479	6,537	44,554

### Ⅳ. 부대의견

- 해당 없음

## V. 작성자

#### 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·국장
강경민	강명화	윤은정	이승환

#### O 대표 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		
강명화	044-201-7179	aziyo@korea.kr		

#### [별지 제3호서식]

#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### 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○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(R&D, 환특)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(약60억)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

#### 〈항목별 재원 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○ 조세수입·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·차입						
○ 회계·기금 간 전입						
○기존 예산·기금의 항목 간 조정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30,000
○기타						
〈합 계〉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30,000

# Ⅱ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○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(R&D, 환특)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(약60억)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

#### 〈부문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□ 중앙정부						
ㅇ 환경개선특별회계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30,000
〈합 계〉	6,000	6,000	6,000	6,000	6,000	30,000

# Ⅲ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### 1.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- 환경개선특별회계 감축 부분(약60억)에 대해서,
-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(R&D, 환특)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(약60억)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

## 2.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O 변동 없음

## 3. 기타 재원조달 방안

O 변동 없음

### IV. 부대의견

O 해당 없음

# 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'24.5, 7월	먹는샘물 관련	- 통합하지 않아도 되나, 기재부 등의 부담금 개편
, _	지자체	방향이 이러하면 이견 없음

#### Ⅵ. 작성자

#### 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・국장
강경민	강명화	윤은정	이승환

#### 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명화	044-201-7179	aziyo@korea.kr